

국적회복 허가 흐름도

(국적법 제9조)

2017. 2. 28. 기준

1 신청 및 접수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
-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
 - ※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에서 안내
-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
 - ※ 특별공로자, 우수인재(「국적법」 제7조 제1항 제2호, 제3호 해당자)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필요

2 국적회복 요건 심사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필요 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
-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국적회복 요건 심사

3 심사 결정

법무부

- 범죄경력조회, 신원조회,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

4 고시 및 통보

법무부

-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
-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(가족관계등록부 생성)

5 외국국적 포기 등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(원칙)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
 -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「국적법」 제10조에 규정
 - ※ 만 65세 이상 영주귀국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

6 주민등록

- 주소지 읍·면·동 사무소(주민센터)